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30730 손해배상(기)

원 고 박AA

피 고 김BB

변 론 종 결 2015. 12. 11.

판 결 선 고 2016. 3.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값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김CC는 1986. 11. 30. 결혼식을 올리고 1988. 6.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딸 김DD(2000년생)을 두고 있다. 김CC는 아래와 같이 피고와 만나기 이전에도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김CC는 수년간 별거를 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89년경 처음 만난 이후 1995년경 원고가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피고가 근무하는 등 계속 친밀하게 지내왔다.

다. 김CC와 피고는 2010. 9. 1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와 김C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로부터 '2010. 6.경부터 2010. 9. 15.까지 김CC와 만나고 간통했으나, 이후에는 김CC에게 접근하거나 통화를 하지 않겠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라. 그러나 그 후에도 김CC와 피고는 계속 만났고, 피고는 2011년경 당시 배우자였던 소외 김EE과 이혼하였으며, 2015. 1. 22. 김C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 |
|---|
| <p>- 오자마자 컵라면에 김밥 반줄 먹었는데 또 머가 먹고 싶네 생리할 때가 되어서 그런가 봐요</p> <p>- 전화 받아요.. 계속 안받음 매장으로 들어갈 거예요</p> <p>- 전화 주세요.. 할 말이 있으니-안갈거니까 연락주세요</p> |
|---|

마. 김CC의 휴대전화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한 원고는 2015. 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까지 김CC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김CC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김CC와 내연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김CC의 나이,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과정, 자녀의 유무, 피고의 나이, 피고와 김CC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이 사건 소송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5. 4.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11.까지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소영